

[정관변경 검토사항]

1. 공고방법

- 회사에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추가로 공고방법 간편화 할수 있음.
단, 공고방법 변경은 등기사항으로, 변경시에는 필히 등기소에서 변경해야 함.

2. 주주총회 결의방법

-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 추가
(출석주주의 의결권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함)

3.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 임원보수규정 신설
-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신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 2배 (10년 ↑ 2%) ✕
- 임원 사망위로금지급정 신설

4. 이익잉여금처분

[법인세법시행령 43조 1항]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관규정에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임원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정관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5. 이익배당

- 현물 가능조항 추가 (이익의 배당은 금전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할 수 있다.)
- 차등배당가능 조항 추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낮은 배당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들간에 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중간배당 신설

- 중간배당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가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3인 이하로 (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만 이사회 구성가능) 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준일 공고 결의 및 중간배당 결의를 합니다.
※주의사항 : 이사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야하는데, 주주총회 결의로 할 경우는 부인당할 수 있음(주의)

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① 퇴직금 산정방법 : 소득세법상 한도(소득세법 제 22조) 적용
- ② 지급배수 : 2020년부터 2배 적용

● 임원보수

1. 결정권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실무는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도 같습니다.

2. 결정방법

(1)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서 구체적 액수를 기재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일반 근로자도 임원의 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관 규정은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는 주주총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별도로 임원 보수를 결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하는 것으로 충분 합니다.

(2) 주의사항

간혹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고 지급한 이사의 보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임원의 퇴직금

임원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어 정관에 퇴직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임원의 상여금

상여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지급근거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법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제43조 2항)
-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제34조 3항)
〈참고〉 ②항은 상여금한도규정, ③항은 지배주주임원에 대한(일반급여+상여금)의 총액한도규정입니다.
-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31. 개정)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사항

●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사항에 대한 정리

이사회는 이사가 3인이상 있는 경우에 존재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상 존재하는 이사회권한사항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됩니다(제383조 제4항, 제6항) 그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행사하는 사항]

1.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제340조 3 제1항 제5호)
2. 대표이사의 선임 (제389조 제 1항)
3. 이사의 겸업의 승인 (제3697조)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398조)
5. 신주발행 (제416조)
6. 준비금의 자본전입 (제461조)
7. 중간배당 (제462조의3)
8. 사채모집 (제469조)
9.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3조, 제516조의2)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행하는 사항]

이사의 권한이었으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소집결정(상법 제362조), 지배인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및 폐지, 주요자산의 처분 및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제393조 제1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 적용되지 않는 사항

이사의 결의 사항이지만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 결의요건, 이사회 의사록 등의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